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취소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8.

가. 등록 취소 상인회 현황

전통시장명	상인회(대표)	소재지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비고
강남시장	강남시장 상인회 (대표:나○상)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07번길 11-2	2012.2.1.	2022.9.27.	

나. 등록취소 사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취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